

### 3.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 4.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

#### 1.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 신용정보제공·이용자<sup>\*</sup>는 개인신용정보<sup>\*\*</sup>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손보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신용조회업자(Credit Bureau : CB)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신용정보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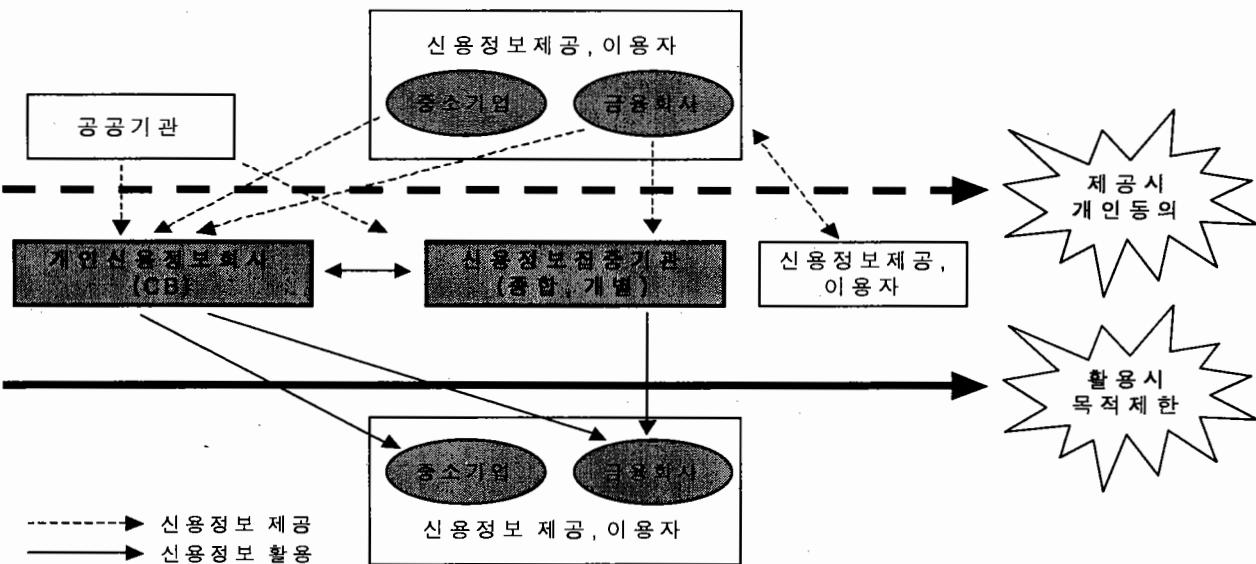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중소기업 등이 해당(신용정보법 §2 VI) 이하에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본 내용을 설명

\*\*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 한편 CB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개인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와 산출된 개인신용평점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함

- 또한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신용정보와 외부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CB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고객신용정보를 종합, 가공, 분석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상거래 개시여부(대출실행, 신용카드 발급 등), 상거래조건(금리, 한도 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신용정보법 §24①),
  -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거래 설정·유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고객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음(동법 §24①)
  -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고객 동의 없이 상거래 설정·유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제공·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인신용정보 유통·활용 체계



2.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은 <붙임1>  
과 같음

(붙임1)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정보의 종류 및 세부내역

### 1. 식별정보

구 분	항 목	내 용	
식별 정보	개 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직 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하되, 동 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 번호(여권번호 조합)를 사용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집중(주민등록초본에 의한 확인) • 점포코드, 성명, 변경전·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경우 제외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업 종	

## 2. 신용거래정보

### 1) 개설·발급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개설·발급 정보	당해 개인	가계당좌예금 개 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 일 이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신용체크카드 발 급 및 해지사실	0083	0084		
	개인기업 및 법인	가계당좌 개설 및 해지사실	0011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0021	002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0081	0082		

### 2) 개인대출정보 등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대출현황	당해 개인	대출거래사실	0031	0032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 20일 이내)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여 부 포함
카드론현황		카드론 거래사실	0037	0038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 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0041		매월1일, 11일, 21일 (휴일일 경우 익영업 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 3)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개인채무 보증정보	당해 개인	채무보증사실	0033	0034	사유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신협 은 20일 이내)	

### 4) 기업신용공여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지 코드	집중시기	비 고
대출 · 지급보 증 등 신용공 여(담보, 한도 거래 및 신용 공여기간 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기업 및 법인</li> <li>-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체</li> <li>- 무계열 기업군 및 법인의 소속 기업체</li> <li>-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출 ·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권별 신용공여조사표」&lt;별지 제5호&gt; 서식 &gt;에 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집중(신용공여) :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li> <li>· 월집중(신용공여, 담보 현황, 한도 거래상황) : 익월 6영업일 이내(단, 「기업어음거래상황표」&lt;별지 제6호&gt; 서식&gt; 해당 정보는 은행, 증권, 종금 업권에서만 제공함)</li> </ul> </li> </ul>	

## 5) 연체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대출금 연 체	1. 교육부 학자금대출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0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2.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1	"			
	3.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2	"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신협은 20일 이내)	
	4.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3	"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		
신용 카드 대금 연체	5.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할부 금융 대금 연체	6.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5	"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매 입 외 환 연 체	7.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 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0106	해당 연체사 유가 해소된 때			
외 환 관 련 연 체	8.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 업일을 가산한 날로부 터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 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		
해 외 대출금 연 체	9.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	원 이하인 경우 해제 시 : 해제와 동시삭제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 일 이내)	
기 일 경 과 어 음 미결제	10. 만기일 경과 어음 을 1개월 이상 미결제 한 거래처	0109	해당 기일경 과 어음을 결 제한 때			종금사 및 은행 종금계정 CP에 한함
무보증 회사채 상 환 불이행	11. 만기도래하여 지급 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 처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 보증 회사채 를 상환한 때			
무담보 미 수 채 권	12.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 래처	0111	해당 무담보 미수 채권을 상환한 때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해제시 : 1 년		증권사에 한함
부 실 채 권 인 수	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2	해당 등록사 유가 해소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1년)		
부 실 채 권 차 주	14. 정리금융공사가 인 수한 부실채권차주	0113		-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 삭제		

#### 6)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지 급 보 증 대 지 급 · 대 위 변 제	1. 지급보증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 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1 0202	해당 지급보증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시 : 해제와 동시에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	
해외 자금보증 대지급금	3. 자체대손보전 관련 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3 0204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20일 이내)		
소 구 구 상 불 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공 신 보 대 금	6.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206 0207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 "	- 해제와 동시에 삭제 - 기간경과 해제시 : 1년		

## 7) 부도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어음 수표 부도사 실	1. 어음·수표 부도사 실이 있는 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사유로 인한 부도 사실거래처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 일 익영업일로 함	0404	등록사유가 발생한때	- 1년		정보등록 업권에만 제공함을 원칙
가계 수표 최종 부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1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당좌 수표 최종 부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2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 1년		사유발생일 로부터 10 일 이내
약속 어음 최종 부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 처분거래처 - 어음교환업무규약 에서 정하는 거래정지 처분 대상거래처를 말 하며, 등록사유발생일 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3	-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 기간경과 해제 없 음. 단, 2001. 1. 2.전 에 등록사유가 발생 한 어음부도거래정보 는 등록사유발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 제사유발생일로 봄	- 1년		

## 8) 관련인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고
관련인	<p>전 5)~7)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p> <p>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p> <p>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p> <p>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p>	각 등록 코드 앞에 '9' 표시	<p>관련 거래처의 신용거래정보 등록 사용이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p>	<p>-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 -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p>	<p>- 과점주주 및 최다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p> <p>- 특수채권 관련인은 각 등록코드 앞 "8" 표시</p>

### 3. 금융질서문란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 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금 융 거 래 관 련 부 당 행 위 자	1.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090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 5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	개인이 동일 인한도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2.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0902	"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0903	"			
	4.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4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5.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 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6.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0906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7.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0907	"			
가 계 당 좌 불 량	1.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091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0912	"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1.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0922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 출 보 험 사 고	1.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0923	"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 보존기간	집중시기	비고
신용 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1.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093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5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	
	2.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2	"			
	3.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3	"			
	4.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0934	"			
	5.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0935	"			
	6.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6	"			
	7.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7	"			
	8.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0938	"			
	9.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0939	"			
	10.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0940	"			
신용 회복 지원 관련자	1.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0950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2.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0951	"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p>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p> <p>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p> <p>다.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p> <p>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p>	각 등록 코드 앞에 'g' 표시	관련 거래처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거래처의 해제시 : 동시삭제</li> <li>- 관련 거래처의 기관경과 해제시 : 당해 회사의 관련 거래처의 기록보존기간을 따름 (5년)</li> </ul>	<p>- 과점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p>

#### 4. 공공기록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비고
국세 체납	1. 국세체납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1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2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3			
지방세 체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4	-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동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봄	- 해제와 동시에 삭제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5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06			
관세 체납	7.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1			
	8.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2			
	9.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3			
채무 불이행자	1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0801			

## 5. 신용능력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집중시기	비 고
일반정보	외부감사 실시기업	차 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종업원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보등록기관에만 제공
		주 소	본사(자택)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화번호	본사(자택)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업종, 산업분류코드(세분류)			
		설립일자	설립일자			
		경영방식	창업자(소유주), 창업2세, 동업, 전문경영인, 기타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재무상태	결산일자, 총자산, 자본총계,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자본금			
재무정보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비재무정보		상장유무	코스닥등록, 거래소시장, 제3시장 거래여부 등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6. 특수기록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기록보존기간	비고
특수기록정보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1001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77	해제와 동시에 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2	”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	1003	”			
	4.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4	”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1005	”			
	6.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006	”			
	7.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101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201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일	130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1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하는 날	140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국외이주포기신고서에 의해 국외이주를 포기한 때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150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또는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